

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·규칙심의회·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342 호

「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」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년 4월 29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부응하여 2011년도 이후 동결된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종사원 처우개선 및 청소행정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대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안정적 처리기반을 구축코자 함

2. 주요내용

분뇨 수집·운반 대행계약기간 조정(안 제8호)

- 대행계약 기간 : 2년 ⇨ 3년

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조정 (안 제9조 별표2)

- 분뇨(18ℓ) 230원 ⇨ 280원
- 정화조 기본요금(0.75m^3) 22,310원 ⇨ 22,500원
- 정화조 초과요금(0.1m^3 당) 1,610원 ⇨ 2,200원
- 지하활증 5% ⇨ 7%

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
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2년 단위로”를 “3년 단위로”로 한다.

별표2를 아래와 같이 한다

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(제9조 제1항 관련)

구분	부과기준	부과금액	비 고
분 뇨	18 ℥	280	
정화조	기 본	0.75 m ³ 까지	22,500
	초 과	0.1 m ³ 당	2,200
	야간할증	정화조청소요금	7%
	지하할증	정화조청소요금	7%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분뇨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신청한 자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: 환경과장, 주소: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(예관동), 전화:3396-5611, fax:3396-8761, 메일: ffyong69@ 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: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1부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8조(분뇨수집·운반등의 대행)</p> <p>①~②(생략)</p> <p>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<u>2년 단위로</u> 재계약할 수 있으며, 필요시 구청장은 경쟁력 있는 대행업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[별표2]</p> <p>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(제9조 제1항 관련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: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부과기준</th><th>부과금액</th><th>비고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분뇨</td><td>18 ℥</td><td>230</td><td></td></tr> <tr> <td>정화조</td><td> 기 본 0.75m³까지 초 과 0.1m³당 이전월증 정화조청소요금 차할증 정화조청소요금 </td><td> 22,310 1,610 7% 5% 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부과기준	부과금액	비고	분뇨	18 ℥	230		정화조	기 본 0.75m ³ 까지 초 과 0.1m ³ 당 이전월증 정화조청소요금 차할증 정화조청소요금	22,310 1,610 7% 5%		<p>제8조(분뇨수집·운반등의 대행)</p> <p>①~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3년 단위로</u> -----</p> <p>[별표2]</p> <p>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(제9조 제1항 관련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: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부과기준</th><th>부과금액</th><th>비고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분뇨</td><td>18 ℥</td><td>280</td><td></td></tr> <tr> <td>정화조</td><td> 기 본 0.75m³까지 초 과 0.1m³당 이전월증 정화조청소요금 차할증 정화조청소요금 </td><td> 22,500 2,200 7% 7% 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부과기준	부과금액	비고	분뇨	18 ℥	280		정화조	기 본 0.75m ³ 까지 초 과 0.1m ³ 당 이전월증 정화조청소요금 차할증 정화조청소요금	22,500 2,200 7% 7%	
구분	부과기준	부과금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
분뇨	18 ℥	230																							
정화조	기 본 0.75m ³ 까지 초 과 0.1m ³ 당 이전월증 정화조청소요금 차할증 정화조청소요금	22,310 1,610 7% 5%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부과기준	부과금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
분뇨	18 ℥	280																							
정화조	기 본 0.75m ³ 까지 초 과 0.1m ³ 당 이전월증 정화조청소요금 차할증 정화조청소요금	22,500 2,200 7% 7%																							